

# 새로운 도전과 대응(II)

-DDA 농업협상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 1. 농업협상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은?

세계 교역질서를 다루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8)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공산품 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농업분야는 거의 예외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허가제도 등 비관세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관세화하는 한편,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도 줄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협상결과에 따라 각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하여, 이 합의에 딸 2000년 1월부터 농업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도하개발아젠다 : DDA)이 출범되었고 여기서 농업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농업협상의 기본 방향〉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 재확인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
-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 수입국들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s)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고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 〈농업협상 일정〉

- 2003년 3월까지 : 관세·보조금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확정
-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 각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 2004년 12월 말까지 : 협상 종료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2002년 3월부터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Modality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WTO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국들은 UR협상이 농업분야를 다자무역체제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UR협상의 이행 결과 농산물 교역확대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UR협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수출경쟁(6월), 시장접근(7, 9월), 국내보조(9월) 분야에 대한 1차 논의 마무리
-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 등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수출국들은 관세의 대폭 감축 및 국가간 관세격차 철폐, 무역왜곡적 보조금의 철폐 등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입국들은 각국의 농업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접근방식과 점진적 감축을 주장



• 2002년말까지 그동안 논의 결과 드러난 주요 쟁점과 기술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추가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되며, 2003년초부터는 Modality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 진행

Modality는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 폭, 농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정책의 종류와 금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부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2-1. 관세 및 특별긴급관세(SSG)

#### ① 관세 감축폭·방식

농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관세감축입니다. 특히 UR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새로 시장을 개방한 농산물의 경우 국내외가격차 만큼의 관세 부과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수백%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출현하였으며, 이와 같은 높은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수출국들은 높은 관세로 인해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거의 없고 UR협상 결과 전체가 퇴색되었다며 관세를 대폭 감축할 것을 주장

- 농산물의 관세율이 공산품의 10배에 달하고 있어 불공평함

- 국가간·품목간 관세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스위스공식을 도입하여 관세를 감축

※ 미국은 관세율 25%를 상한으로 하는 스위스공식 주장

- 스위스공식 :  $T = t \times A / (t + a)$

(T:공식적용 후 세율, t:공식적용 전 세율, a:관세율 상한)

• 우리나라·EU·일본 등 수입국들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관세감축에 반대하고, UR협상방식에 의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감축을 주장

-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 감축에 있어 신축성 필요

- 높은 관세는 UR협상에서 합의한 관세화의 당연한 결과로 수출국들의 주장은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는 것임.

- 많은 국가들이 UR협상에서 합의된 틀을 바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이 추진

### (주요국 관세율 현황)

(%, 2004년 양허세율 기준, OECD자료)

구 분	농산물 평균 관세율	공산품 평균 관세율	전품목 평균 관세율
한 국	62.2	11.4	18.3
일 본	11.7	3.6	5.1
E U	19.5	4.1	7.4
노르웨이	123.7	3.4	26
스 위 스	51.1	1.9	8.9
미 국	5.5	3.8	4.1
캐 나 다	4.6	5.3	5.2
호 주	3.3	10.6	9.7
인 도	124.3	59	67.4

※ OECD 분석자료로 농산물 범위 등의 차이로 WTO 협정상의 세율과 차이가 있음

중인 농업개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UR협상과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함.

※UR협상시 관세감축율 : 선진국은 6년간 평균 36%, 최소 15%,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4%, 최소 10%

②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 SSG)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에서 기존의 수입제한품목들을 관세화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에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농산물에 대해 이 제도를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 케언즈그룹, 수출개도국들은 이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
- 이 제도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사용하는 국가도 매우 적음
-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 적은 물량에도 발동이 될 수 있어 무역의 흐름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음
- 국내 농업에 피해가 있으면 일반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활용하여 보호하면 됨.
  
- 우리나라, EU, 일본 등 수입국과 동구권 국가들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SSG는 관세화의 핵심요소로서 WTO 농업협정에도 농업개혁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존속키로 규정되어 있음
- 수량수입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피해조사 및 판정절차에 웬 시간이 걸리고 구제절차가 까다로와 신속한 보호가 불가능
- ※SSG 사용 통보 국가 : ('99) 9개국→('00)3→('01)4
- ※우리나라 SSG 부과실적('01기준) : 8개 품목, 15,689백만원

**2-2.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

시장접근물량은 UR협상 이전 수입제한품목을 관세화하면서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농산물이 높은 관세와 낮은 관세로 각각 수입되어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히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 지와 관리방법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케언즈그룹 등 주요 수출국과 개도국들은 TRQ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
-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도하각료 선언문의 취지에 맞음
- 이에 대해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대폭 증량에 반대

**<주요국 TRQ 현황>**

(%, 관세율은 2004년 양허세율 기준, WTO자료)

구 분	TRQ 품목수('98)	In-quota 평균 관세율	Out-quota 평균 관세율
한 국	63	21	366
일 본	20	20	274
E U	87	8	45
노르웨이	232	216	239
스 위 스	28	36	81
미 국	54	10	29
캐 나 다	21	8	203
호 주	2	7	27

※ TRQ 품목수는 각국의 HS단위의 차이로 단순비교는 어려움



- TRQ를 대폭 확대할 경우 수입국의 농업이 큰 피해를 입어 식량안보나 환경보호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도하각료선언문 취지에 맞지 않음
-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방법에 대해 엄격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는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관행들 때문에 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공매 등 수입관리방식을 규제하고,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매 등의 조건부과를 금지하는 엄격한 TRQ 관리지침을 제정해야 함.
-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에 대해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품목 특성이나 수입국 시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특정 관리방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TRQ관리에 대한 획일적인 규범을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규범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 됨.

### 2-3. 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대상 국내보조금은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쌀 수매제도가 있습니다.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농산물의 국내외가격차 등을 이용해 측정된 보조총액측정치(AMS)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감축의무를 적용받는 데, AMS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를 놓고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감축폭>

- 미국은 AMS를 각 나라의 '96~'98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로 제한하지고 주장
- 국가간 보조수준의 차이를 없애자는 의미이나, 농업총생산액 대비 보조 비중이 높은 EU, 일본 등이 이에 반대
- 케언즈그룹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을 5년간(개도국은 9년) 균등감축해서 마지막 해에는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
-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행 첫째 년도에 50%를 감축토록 함으로써 개도국에 비해 강화된 의무를 부과
- 우리나라, EU, 일본 등의 NTC국가와 동구권 국가들은 UR협상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
- 각국의 농정개혁 진척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축
- ※UR 감축방식 및 폭 : 기준년도 ('86~'88) AMS를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균등 감축
- ※우리나라 감축보조금 : (기준년도) 22,595억원→('04)14,900

## 알부민 발효화분떡

천연화분에 알부민, 비타민, 미네랄이 첨가되어 꿀벌의 기호도가 좋다

- 별도의 숙성이나 손질없이 바로 먹일수 있다.
- 풍부한 유기산 함유, 봉유량 증가로 건강한 유분을 탄생시킨다.
- 소화 효소제 첨가로 소화력 증진

★꿀벌이 선택하는 가장 이상적인 화분떡  
포장단위 1박스 10kg, 1kg×20



화분떡의 보편화를 선도하는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10-12

☎061-322-6237, 8845

농협 : 641080-52-006542(예금주 : 김태완)